

#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75
----------	------

2019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김 경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 경 의원)

### 1. 제안이유

○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 함양 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현장체험학습의 지원계획,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라.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6일 김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75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하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뉘며, 이중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그 성격상 대부분 실외와 학교 밖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체험유형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 진로체험활동 등으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서는<sup>1)</sup>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1] 현장체험학습의 구분**

구분		개념	소관부서
숙박형 현장체험 학습	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단체 숙박형 여행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수련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 활동	
	기타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제외한 활동으로, 일정 기간 숙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		하루에 이루어지는 단순 관광, 관람, 견학, 강의 등 비숙박 체험 활동	
진로체험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감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	진로직업 교육과

○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보급한바 있으며,<sup>2)</sup>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운영매뉴얼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수립, 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현장답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계약, 사전안전교육 및 사고예방대책, 현장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1)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6)

「2019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sup>3)</sup>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운영 매뉴얼의 보급, 안전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책무 등 총칙적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의 개발 및 보급, 안전교육,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인 구성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구성과 체계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 소요비용 지원 방안, 프로그램 개발, 학생의 안전보호,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현장체험학습 소요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청소년단체

---

3) 진로체험활동은 “2019학년도 서울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및 “진로체험 매뉴얼”에 따름

활동, 관광, 관람, 견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의 경비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체험활동 중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에 한하여 저소득층학생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견학·관람·체험 등 교육사업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그 경비가 학교운영비(학교기타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2]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내역4)**

구 분	지원 자격			지원금액
	법정저소득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타	
초등학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 1인당 40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1인당 14만원 이내 실비 ※ 담당부서: 참여협력담당관
중학교		중위소득 60%이하		
고등학교		해당없음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		중위소득 50%이하		

**[표3] 교육사업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사례**

부서명	사업내용
교육혁신과	학교현장체험학습 버스 운영
중등교육과	국제고 사회적배려계층 체험학습지원

- 이렇듯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종류·형태에 따라 담당부서, 지원 방법, 지원 자격 및 금액 등을 달리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현장체험학습 소요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밖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안 제4조 및 제5조)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4) 2019학년도 초·중·고 학생교육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운영 계획(참여협력담당관, 2019.2.)

의 교육감의 책무로 조문을 이동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안 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2항제4호)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 체험학습 환경 조성	(제2항)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취약계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이미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등의 지원,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으로 하여금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은 유사내용의 중복적 규정으로 특별히 조문을 이동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용어정비에 대한 의견으로 안 제5조제1항의 “현장체험학습”을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소요 비용 지원”을 “소요 재원 지원”으로 수정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조례안 제2조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재원”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나 자금이 나올 원천”으로<sup>5)</sup> 동 조항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는 점에서 용어를 수정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 방안
2. 현장체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
3. 현장체험학습 중의 학생 안전보호
4.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